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벌금·징역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와 벌금 및 징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의 위반사항”에 있어 조치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계서류의 작성에 대해 법조항 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40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① 사업장명 (상호)	② 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업종	⑤ 근로자수	계	날
						년
주소	(연락처 :)					
100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101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예정장						
102 신규화학물질의 원료						
위	관	분	자	양	용	질
량	성	량	성	량	성	량
10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예정장	년	년	년	년	년	년
104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105 신규화학물질 제조업체 주소(주입시 수입업체)						
106 보고서명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용명령을 기록한 서류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장소도						
210mm × 297mm(인용용지 54g)						

가. 위반행위 :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부과금액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다. 관계서류 :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2.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불이행 (법 제40조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조치기준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1,000만원이하의 벌금

3.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법 제40조 제4항)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가. 조치기준 : 1차 경고후 불이행시 범죄 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1,000만원이하의 벌금

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5항)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유해·위험성 조사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5.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가. 위반행위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미게시 또는 미비치
 -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는 미비치
 - ③ 자사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미비치
- 나. 조치기준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단,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또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비치 또는 게시 의무 불이행시 즉시 부과)
-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②항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③항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라. 관계서류 : 물질안전보건자료

6.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he image shows a form titled 'MSDS 교육일지' (MSDS Education Record). It includes fields for '교육일자' (Education Date), '교육장소' (Education Location), '교육대상자' (Education Target), and '교육시간' (Education Time). Below these are checkboxes for '교육대상자 수' (Number of Education Targets) and '교육실시 여부' (Whether Education was Conducted). A large table at the bottom is labeled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Safety Education Attendance List) and has columns for '연번' (Serial Number), '소속' (Affiliation), '성명' (Name), '성별' (Gender), '연번' (Serial Number), '소속' (Affiliation), '성명' (Name), and '성별' (Gender).

- 가. 위반행위 : ①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조치기준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단,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시 또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비치 또는 게시 의무 불이행시 즉시 부과)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 ②항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라. 관계서류 : MSDS교육일지

7.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가. 위반행위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조치기준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단,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시 또는 최근 1년간 2회 이상 비치 또는 게시 의무 불이행시 즉시 부과)

다. 부과금액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명령 또는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 제4항)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취급 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 :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조치기준 :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 ②항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9. 작업환경측정시 미입회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허위보고를 한 경우
 ③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전반기 : 8월 15일
 - 후반기 : 2월 15일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 ②항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③항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라. 관계서류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양 <input type="checkbox"/> 하 <input type="checkbox"/> 반사)					
1. 측정장소		측정 일자			
1) 사업장명	측정 일자				
2) 도로명	측정 일자				
3) 위치	측정 일자				
4) 측정대상	측정 일자				
5) 측정시간	측정 일자				
6) 측정인원	측정 일자				
2. 측정방법					
3. 측정결과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측정결과					
측정 항목	측정 방법	측정 결과	기준치	비고	비고
1) 소음	소음계	95.0	85.0	초과	노출시간 초과
2) 진동	진동계	1.2	0.8	초과	노출시간 초과
3) 열	열측정기	32.5	26.0	초과	노출시간 초과
4) 기타					
5.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6.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7.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8.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9.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0.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1.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2.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3.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4.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5.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6.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7.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8.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9.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20.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21.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22.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23.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24.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25.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26.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27.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28.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29.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30.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31.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32.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33.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34.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35.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36.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37.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38.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39.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40.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41.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42.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43.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44.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45.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46.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47.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48.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49.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50.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51.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52.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53.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54.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55.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56.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57.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58.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59.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60.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61.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62.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63.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64.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65.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66.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67.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68.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69.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70.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71.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72.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73.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74.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75.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76.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77.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78.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79.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80.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81.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82.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83.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84.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85.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86.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87.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88.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89.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90.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91.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92.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93.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94.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95.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96.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97.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98.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99.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00.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10.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①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 나. 조치기준 : 미 실시 1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실시한 경우에는 미 실시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②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라. 관계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자료제공 : 서울지회 동부출장소 조영수 소장